대학원 학칙 중 개정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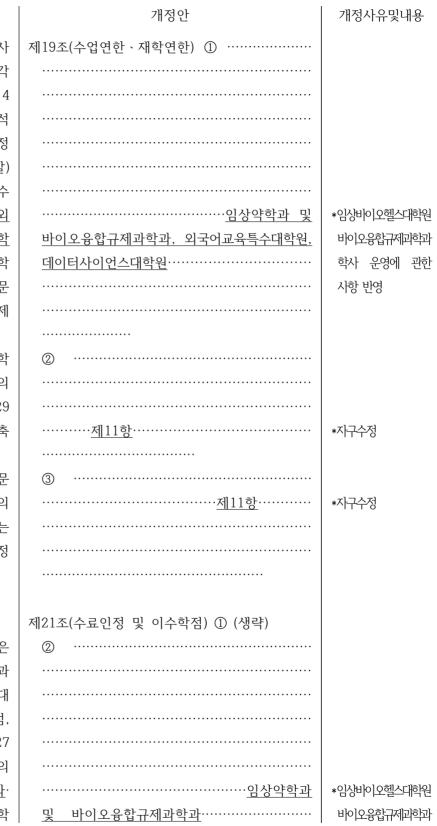
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
-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(온라인 학위과정)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
 하고자 함 (제19조제1항, 제21조제2항, 제22조제1항, 제29조제4항)

구분	내용
수업연한	4학기(2년)
재학연한	입학으로부터 7년 이내 (휴학 기간 포함)
학기당 취득학점	9학점
수료기준	 수업연한(4학기) 이상 등록 수료학점: 30학점(전공 12학점 + 공통 6학점) 성적기준: 총 평균평점 3.0 이상
졸업기준	종합시험 합격

- 2024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(임상약학과, 바이오융합 규제과학과는 제외)의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연구실적 인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(제29조제7항, 제29조제9항 신설)
- 제29조제9항 신설에 따라 제29조 내 항번호 및 제29조를 인용하는 조문 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(제19조제2항·제3항, 제32조제2항, 제32조의2제3항)

대학원 학칙 중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

현행

제19조(수업연한,재학연한) ① 각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각 2년으로 하며,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 년으로 한다.다만,경영전문대학원(주간) 석 사학위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의 수업연한은 3학기,경영전문대학원(주말)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학기,각 특수 대학원(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<u>임상약학과,외</u> <u>국어교육특수대학원 및 데이터사이언스대학</u> 원은 제외)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 기,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,법학전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교육대학원 계절제 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

②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에서, 학 치 제47조의4에 의한 학·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제29 조제2항부터 <u>제10항</u>까지의 사유로 인한 단축 은 허용하지 아니한다.

③ 각 대학원의 각 과정의 재학연한은 논문 제출연한(제29조제2항부터 <u>제10항</u>까지에 의 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이 정 한 석사학위 취득 요건 구비 연한)과 같다.

제21조(수료인정 및 이수학점) ① (생략)

 24 학 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 학점으로 한다. 다만,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는 38 학점, 한국학과는 33 학점, 통역번역대 학원은 44 학점, 경영전문대학원은 45 학점, 법학전문대학원은 90 학점, 교육대학원은 27 학점, 디자인대학원·공연예술대학원·임상치의 학대학원·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<u>임상약학과</u>·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30 학점(임상치의학

대학원 임상구강보건학과는 26학점), 신학대 학원은 33학점,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은 36 학점으로 한다. ③~④ (생략) 제22조(학기당 취득학점) ① 각 대학원 각 학위 Χ 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대학원·사회복지대학원· 정책과학대학원·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학생 은 6학점까지(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경우 임상약학과는 9학점까지, 그 외 전공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 9학점까지), 임 상치의학대학원의 학생은 11학점(전공임상실 습 포함)까지, 디자인대학원·신학대학원·데이 터사이언스대학원의 학생은 9학점까지, 통역 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14학점까 지,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21학점까지,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15학점까지, 공연예술대학원 학생은 1년에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, 경영전 문대학원의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별표 4와 같다. 2~5 (생략) 제29조(학위의 수여 및 종별) ① 각 대학원 각 Х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구술심사를

포함한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 1, 별표 2 및 별표 3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 한다. 다만,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의 학 술지 게재를 학위수여요건으로 할 수 있으

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② 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

혀행

개정안	개정사유및내용
	학사 운영에 관한 시항 반영
③~④ (현행과 같음)	
제22조(학기당 취득학점) ①	
<u>임상약학과 및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</u>	*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
②~⑤ (현행과 같음)	
제29조(학위의 수여 및 종별) ①	

에 갈음하여 이에 준하는 학점을 추가 취득 하거나 연구실적을 승인받고 총 평균성적이 3.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③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에 갈음하여 교과목 3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.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④ 통역번역대학원, 법학전문대학원 및 임상 <u>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</u>에서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종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 한다.

⑤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
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평균성적
3.0 이상인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
 ⑥ 교육대학원, 디자인대학원, 신학대학원 및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 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하 고 총 평균성적이 3.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⑦ <u>사회복지대학원,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(임</u> <u>상약학과는 제외)</u> 및 임상치의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⑧ 공연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 하고 총 평균성적이 3.0 이상인 학생 또는 렉처리사이틀을 통과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<u> <신설></u>

개정안 개정사유및내용 (\mathfrak{I}) ④ …………, 임상 *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 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및 바이오융합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5 ക *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………… (7)에서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에 갈음하여 연구 실적을 승인받은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는 제도를 8 신설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제9항에 반영함 ⑨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(임상약학과 및 바이오 융합규제과학과는 제외)에서 석사학위청구논 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을 승인받은 학생에게

	개정안	개정사유및내용
	<u>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</u>	
	<u>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u>	
학위과정	<u>@</u>	*항번호 변경
计생이 포		
- 석사학		
폴리오의		
츠가 취득		
뱅에게 석		
학위과정	<u>()</u>	*항번 <u>호</u> 변경
데이터사		
9 B0 0]		
르서 학칙	<u>@</u>	*항번 <u>호</u> 변경
충족한 자		
있다.		
크의 학생	제32조(논문제출연한 등) ①	
7년 이		
대학원은		
은 13년		
야 한다.		
조 제6항		
국제대학	····· <u>제11항</u> ······	*자구 수정
¦원은 제		
배체 또는		
석사학위		
조 제7항	3	
<u></u> 이 대체		
¦원(주간)		
에, 통역		
말)의 학		
상치의학		

⑨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 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 트폴리오를 제출하여 합격한 때에는 위를 수여한다. 석사학위청구포트를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3학점을 추 하고 총 평균성적이 3.0 이상인 학생

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⑩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 석사학 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[이언스캡스톤프로젝트 교과목 성적이 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
①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 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 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

제32조(논문제출연한 등) ① 각 대학원 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내, 박사학위과정은 11년(법학전문대 8년(휴학기간 제외)) 이내, 통합과정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② 제29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조 부터 제10항까지에 의하여 대학원, 극 원 및 각 특수대학원(임상치의학대학 외)의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연한 이내에 식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③ 제29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조 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경영전문대학 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3학기 이내여 번역대학원 · 경영전문대학원(야간/주달 생은 과정수료 후 4학기 이내에, 임상치의학 대학원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5학기 이내에

현행

현행

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 부터 5년(휴학기간 제외) 이내에 석사학위 취 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제32조의2(논문제출자격 재부여) ① 제32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 나,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 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 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대 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, 논문 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, 박사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논문 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 야 한다.

③ 교육대학원, 디자인대학원, 사회복지대학원, 신학대학원 및 <u>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</u>의 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은 제29조제<u>6항</u> 및 제7항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이 대체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받은 학기 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디자인대학원 은 제29조제6항의 대체 학점에 더하여 입학 년도별로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의 추가 이수를 명할 수 있다.

④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, 절차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